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2
----------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 (안 제14조의2)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로 이관 개정되어 관련조항 정비(안 제15조)

다. 감면 제외대상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 정비(안 제16조)

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부칙으로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부칙안 제2조)

3. 개정근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1.10.13.~11. 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1.15)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추징대상”를 “추가 징수대상”으로 하고,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5조의 제목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본문 중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을 “감면대상 업무”로 한다.

제16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u>아니한다</u>.</p>
<p>제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u>당해</u>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u>해당</u> ----- -----</p>
<p>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 ----- -----</p>

현행	개정안
<p>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p> <p>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에 대비하여 <u>해당연도</u>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 나. (생략)</p> <p>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u>추징대상</u>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u>추징</u>한다.</p> <p>1. ~ 2.(생략)</p>	<p>1. ----- ----- ----- ----- ----- ----- ----- ----- <u>해당 연도</u> ----- -----</p> <p>2. ----- ----- <u>해당 연도</u> -----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 ----- <u>추가 징수대상</u> ----- ----- <u>추가 징수</u>한다.</p> <p>1. ~ 2.(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 해당 연도-----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p> <p>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p>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p> <p>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 ----- ----- ----- 감면대상 업무----- -----</p> <p>제16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p>